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. 4. 15 선고 2020가단589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이○○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이△△ 사이에 201x. x. xx.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소외 이△△에게 AA지방법원 SS등기소 201x. x. xx. 접수 제xxxxx호
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